

## 회계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사전예고

대구시설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고 함) 『회계규정시행내규』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공단 『규정관리규정』 제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합니다.

2018년 10월 4일

대구시설공단 이사장

### **1. 규정명칭** : 회계규정시행내규

### **2. 개정이유**

-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대구광역시의 청렴계약서 개선 권고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징구하는 청렴내약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함

### **3. 주요내용**

- 청렴서약서의 내용에 계약의 전과정에서 직·간접적인 금품제공 및 부정한 취업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함(안 제34조 제3항)

### **4. 의견제출**

-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신 후 담당자 앞으로 서면(문서, 팩스, 컴퓨터 통신 등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자 개인성명 또는 단체이름	
주 소	
연 락 처	
의견내용	
의견제출의 근거	

※ 의견내용 및 의견제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.

○ 의견제출 시한 (도착기준) : 2018년 10월 24일(수) 18:00까지

## 5. 접수부서, 담당자, 연락처 등

○ 접수부서 및 담당자 : 경영지원처 기획예산팀 도민정

○ 연 락 처 : (전화) 053-603-1113 (팩스) 053-603-1040

(이메일) dgs01@dgsisul.or.kr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설공단 경영지원처 회계팀 담당자 (☎053-603-113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회계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

대구시설공단 회계규정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 제3항 중 “경쟁 입찰에서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위반 시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으로 하고 1호 내지 3호를 신설한다.

1.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는다.
2. 입찰 및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·간접적으로 금품·향응 등(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)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.
3. 위 각 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의 낙찰자 결정 취소,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, 부정당업자 제재, 입찰참가자격(수의계약 포함) 제한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민·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.

### 부 칙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4조(청렴계약) (생   략)</p> <p>① ~ ② (생   략)</p> <p>③ 제2항의 청렴서약서에는 <u>경쟁 입찰에서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위반 시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<p>&lt; 신   설 &gt;</p>	<p>제34조(청렴계약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다음 각 호의</u> -----.</p> <p>1.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는다</p> <p>2. 입찰 및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·간접적으로 금품·향응 등(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)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.</p> <p>3. 위 각 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의 낙찰자 결정 취소,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, 부정당업자 제재, 입찰참가자격(수의계약 포함) 제한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민·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</p>